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3. 6. 20.>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구분	[] 발급 [] 재발급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분실일자:)			
	[] 훼손(훼손일자:)			
	[]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추가			
	[] 기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사진 1장(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